

#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8. 5. 1.  
시민보건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25. 나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7. 6. 25.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97. 7. 14.) 상정, 심사

제5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8. 5. 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 가. 제 안 이 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01호)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보건소장 임용직렬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함. (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95. 12. 29 법률 제5105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 임용직렬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 제4조(공무원의 정원) 및 제5조(하부조직)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 정 안 요 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김순금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 다음에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삽입함.  
(제1조)

- 현행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함.  
(제3조 제2항)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 수 의 건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사 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8. 5. 1.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 다음에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삽입함.

(제1조)

—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함.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 다음에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	-----

제출일자 : 1997.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1995.12.29 법률제5101호)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 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보건소장 임용직렬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 에서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함. (안 제3조)

3. 개정근거

- 지역보건법(1995.12.29 법률 제1501호)
- 지역보건법시행령(1996.7.13 대통령령 제15119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수반여부 : 해당없음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보건소법제 2조”를 “지역보건법제 7조”로 한다.

제 2조 중 “보건소법제 4조”를 “지역보건법제 9조”로 한다.

제 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2조</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적) ----- <u>지역보건법 제7조</u> ----- ----- -----</p>
<p>제 2 조 (업무) 보건소는 <u>보건소법 제4조</u>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p>	<p>제 2 조 (업무) ----- <u>지역보건법 제9조</u> -----</p>
<p>제 3 조 (소장) ①<u>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u></p> <p>②(생략)</p>	<p>제 3 조 (소장) ①<u>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